

『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10월 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10월 20일

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황 종 철

나. 제안이유

-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규제조항을 삭제하고, 모호한 조항은 정비하며, 성별영향평가와 상위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유통분쟁 해결과 소비자 등의 권익 보호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상위법과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한 위원회 구성 방안 보완(안 제2조)
 - 위원장 대상을 당초 부시장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
 -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 반영으로 위원회의 성비를 규정
-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조항 삭제(안 제10조)
 - 상위법과 달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50인 이상의 연서로 신청하게 규정한 조항을 삭제

○ 조정 거부 사유 중 애매한 조항 삭제(안 제13조)

- 분쟁의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

○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명 호

○ 본 조례안은

구미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

-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규제 조항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의 조정 신청시 50인 이상의 연서 제출,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불명확한 사항을 정비하여, 원활한 유통분쟁 해결과 소비자 등의 권익을 보호 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